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사회권 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밝힌 문제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고들을 유보 없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사회권의 보장을 회생해온 '경제우선주의' 정책기조나 분단상황을 강조하는 특수성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제2차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언급한 사회권 보장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규범들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들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

하나. 노사정위 중심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기근로계약 제한,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성 인정, 차별 철폐 등 규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금융산업노조, 대우자동차노조 등 파업권 행사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대우자동차, 대우캐리어 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및 경찰력 사용 제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전공련, 교수노조(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교수노조 인정 및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라.

하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노동악법, 복수노조 금지조항 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산업재해율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안전규제와 근로감독 활동을 강화하라.

하나. 현대판 노예제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자녀들의 교육권을 비롯해 규약 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호주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여성과 남성 간 임금의 격차, 직장 내 여성 차별 및 성희롱,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 등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라.

하나. 매춘산업에 이용된 아동들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장애인 2% 고용의무가 실효성을 갖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액을 현실화해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을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 주거권에 관해 정부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민간개발에 의한 강제철거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보장하라. 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 주거 빈곤 계층에 대해 적절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건의료예산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민간 의존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라.

하나.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초중고 및 대학교육 전 단계에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및 교육과정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교육과정에 인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

4. 관련 언론 보도 자료

● 4월 20일 ●

<한겨레>

“한국 열악한 사회권 국제사회 알리겠다”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7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권규약제2차 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구제금융 이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축소돼 국민들의 사회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1999년 6월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사회권 규약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대회의는 보고서에서 △대량해고 등 노동권 침해 △대우차 노조 폭력탄압 △비정규직 양산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상황이 정부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단은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간사는 “정부 보고서는 실업률 증가와 난민지위 불인정, 노조탄압 등 민감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특히 1997년 이전의 통계들만 제시하며 한국의 사회권이 대폭 신장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박찬운 변호사는 “지난 95년 1차 보고서 제출 이후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노동자들의 파업권 보장과 외국인 노동자 동등대우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0년 4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가입했으며,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최종견해 및 권고사항 발표는 다음 달 11일에 이뤄진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연합뉴스>

“시민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참가단 파견”

김성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5년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심사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유엔이 객관적으로 국내 사회권 상황을 심사·권고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은 회의 첫날인 23일 사진과 도표 등을 이용해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각분야별로 ▲대량해고문제 ▲비정규직양산 ▲단결권문제 ▲외국인노동자·여성·장애인·난민에대한차별 ▲의료보험 ▲사교육비 문제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가단은 특히 대우자동차 노조 강제진압을 비롯, 노조활동 탄압문제도 사회권침해의 중요한 사례로 제기할 계획이다. sungjin@yna.co.kr

<한국일보>

시민단체·법무부 ‘스위스 격돌’ 유엔 ‘권리委’회의 참석 “정부제출 보고서에 반론 펼치겠다”

스위스에서 한국 법무부와 국내 시민단체간의 격돌이 벌어지게 됐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7

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부터 5월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25차 회의에 4명의 대표를 파견,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펼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80여쪽에 이르는 반박보고서까지 마련했다. 이들은 “정부 보고서는 1997년까지의 상황만을 토대로 작성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크게 후퇴한 사회적 권리 보장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시민단체에 허락된 발언기회를 이용해 대량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 무너지는 사회보장제도, ‘진료비 할인’수준의 의료보험, 대우자동차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탄압 등 사회권 침해사례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95년 1차 보고서 심사를 받았고, 이번 심사를 위해 제출된 보고서는 99년 법무부에서 작성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동아일보>

“시민단체,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 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7개 인권 시민단체들은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약칭 위원회)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20일 “민변 김선수(金善洙) 박경신(朴景信)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이 회의에서 대우자동차 노조원 강제해산 사건, 구조조정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대표들은 또 “이 회의에서는 99년 6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뒤 5월11일 위원회의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이 발표된다”며 “정부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보고서가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보고 반박보고서를 준비해왔다. 이들은 “대우자동차 노조원 강제해산 장면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가 세계고문방지연합, 국제법률가위원회 등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국민일보>

“노동권 인권 침해 유엔서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 민변 김선수 변호사 등 참가단 4명을 21일 파견했다. 참가단은 지난 99년 한국정부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사회권 규약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통해 IMF 구제금융 이후 열악해진 여성·외국인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사회권 현실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반박 보고서는 △대량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전체실업률의 6.8배에 이르는 장애인 실업률(28.4%) 등 장애인 차별 실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외국인노동자 △외환위기 이후 우선적으로 해고와 비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 여성노동자의 현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 정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회권 상황을 담고 있다. 참가단은 특히 대우자동차 노조 폭력사태와 오이도역 수직리프트 추락 때의 장애인 사망사건 등 사회권 관련 사진과 도표 등도 심사과정에 제출, 중요한 사회권 침해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대우차 노조 폭력사태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가져가 세계고문방지연합,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 노동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상영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90년 사회권 조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조약에 규정된 권리 보장이행실태에 대해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심사는 지난 95년 1차 심사 이후 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권운동사
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95년 1차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정당
한 노조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이 우려된다고 권고했었다”며 “국내의 열악한 인권현실,
특히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노동일보>

사회단체, 정부 유엔 보고서 비판

노동권… 근로자 파견으로 고용불안 가속 주거권… 세입자에는 철거피해 무대책 교육권…
교육비용 대부분 사적부담 의존

지난 95년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사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등 주요쟁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비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사회권 상황을 평가한다
는 데 의미를 들 수 있다.

특히 민변,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권 연대회의’가 1년6개월동안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잘못된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고 있어 사회권위원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회권위원회는 각국의 NGO 단체들이 평가한 내용을 유엔 공식문
서로 인정, 평가에 참고하기 때문이다.

◇ 노동권=연대회의는 정부보고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고 있으나 오히려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인정하면서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인원삭감만으로 구조조정을 이루려는 지금의 방식을 재고하고, 실업자 재
취업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것을 연대회의는 촉구했다.

또 노동3건과 관련, 정부가 파업현장에 경찰을 투입해 진압하고 노조간부들을 형사처벌하
는 것은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방해하고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주거권=연대회의에 따르면 정부보고서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
에 대한 임시수용,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조치가 언급돼 있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조치를 세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임시주거시설, 주택자금 융자 등의 조치는 가옥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권=연대회의는 정부가 과밀학급, 과대규모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는 보고서를 냈지만 구체적인 교육투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교육평균연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면서 소요경비 대부분을 사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음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제1차 정보보고서 심의 이후 중등교육 무상화의 진척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지적

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4월 21일 ●

<노동일보>

대우차 노동자 ‘폭력진압’ 유엔서 평가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국제조약 준수여부 심사

사회단체 대표단 파견…이랜드·롯데호텔 파업 과잉진압도 부각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문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스
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될 전망이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뿐,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 대해 눈감고 있
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 등 4명의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생생
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대회의는 “최근 날로 심해지는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인권침
해의 중요한 사례로 알릴 예정”이라며 “지난 10일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의 실상
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세계고문방지연합(OMCT),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등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인권단체를 방문,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관련 비디오를
전달하고 국제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회의가 열리는 유엔 벌
당내에서 각국의 NGO 단체와 접촉, 대우차 문제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대표단의 일원인 민변 박찬욱 변호사는 “대우차노조 사무실 출입은 법원에서 결정된 정
당한 권리”라며 “법체계를 무시한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경우, 파문이
적잖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정부가 제출한 유엔 보고서에는 대우차, 이랜드, 롯데호
텔 파업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사회권위원회들은
최근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위원들이 제대로 비판할 수 있
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5년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심사하고 있으며 이번 제네바 회의
에는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4월 23일 ●

<시민의 신문>

“인권 침해·불평등 심화”

인권단체, 유엔 경제 사회·문화 권리 위에 정부보고 반박서 제출

인권단체들이 국내 사회·인권문제를 종합 진단한 보고서를 유엔에 전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사회권연대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부터 18일간 열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참석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 이행 보고서가 올바른 심사·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단을 보낸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이를에 걸쳐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게 되는데, 인권과 평화의 수호자로 알려진 현 정부의 사회권 관련 정책과 이행정도에 대한 국제사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뿐,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 대한 성실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사회권연대회의는 이번 제25차 사회권연대회의에 반박보고서를 제출해,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현주 기자 jhjoo@kngo.net>

● 4월 24일 ●

<한겨레21> 제356호

[사람이야기] 제네바로 가는 ‘국정 감시자’

“열악한 국내 현실에는 눈감은 채 일부 정책을 놓고서 자화자찬만을 늘어놓는 우리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일침을 가할 생각입니다.”

김선수(40)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연대간사 김기연(25)씨,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 이주영(28)씨 등 3명은 제네바로 출발하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의 제25차 회의에 참가해 한국 정부가 낸 이행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1990년 이 규약에 가입한 뒤 1995년 1차 보고서를 내고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뒤 6년 만에 다시 심사를 받게됐다. 규약 가입국은 5년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전교조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 반박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들은 이를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1995년 이후 정부가 사회권 분야와 관련해 노동법 개정, 교원노조의 노동3권 부분적 인정, 성폭력특별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을 통해 일정한 발전을 이뤘다는 게 일부 인권전문가들

의 견해다. 그러나 1995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시민 사회의 참여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정이 생략된 채 제출되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은 보고서에 1997년 이후의 실업률, 여성고용 현황, 소득분배 현황, 산업재해 발생률 등 주요지표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1차 심사 때도 참석했던 김 변호사는 “구제금융사태 이후 이뤄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사회권 전반에 끼친 영향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는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의 민중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1차 심사 때 교원노조 문제가 핵심쟁점이 됐던 것처럼 이번 심사에는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 4월 25일 ●

<인권하루소식 제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저격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첫날 오후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발표를 경청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의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도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유일하게 사진과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이용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으로 발표를 시작한 박경신 변호사는 1차보고서 심사 때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7.2% 줄어든 반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4% 증가했던 사실과 해를 거듭할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대표단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사회권의 사각지대에 몰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짐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한 여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허지조각에 불과한 현실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편

의 시설의 부족 혹은 허술한 설비로 장애인들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려 한다는 점도 알렸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한국에서 사회권 보장의 진전을 피하는데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며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민간단체의 발표가 끝나자 이번 회기의 의장인 필리핀 출신의 단단 씨는 이례적으로 “매우 홀륭한 발표”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기타 자료들을 유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제네바 = 이주영]

● 5월 4일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무로 여기는가’였다.

한국정부 대표들은 매번 강하게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과 재정적인 제약, 국민의 정서, 문화적 전통, 안보상황” 등을 평계삼아 꼽무니를 빼곤 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수준에 비춰 볼 때 사회권 보장이 미흡하다 △95년의 1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사회권을 의무로서 보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 사회권 철학 빙곤

한국정부대표단은 30일 기조연설에서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철학의 빙곤’을 드러냈다.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한국정부의 철학인가”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디 위원(요르단)은 “아이엠에프와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할 때 사회권 조약에 대한 의무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질문했다. 한국정부는 “사회권 조약의 권리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 있고,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회·경제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

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위원들은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주요 내용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와 노조활동에 대한 공격이었다. 멕시코 위원(프랑스)은 “단결권은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왜 아직도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또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화적 전통, 법의 준수 등을 근거로 단결권과 파업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멕시코 위원은 양규현(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전통이란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게 심사되었다. 우선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체아수스 위원(루마니아)은 “아동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대표, 사실 왜곡도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적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주요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위원들은 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결국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는 낮은 의료보험료, 과열된 교육열, 물가인상 등을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과정에서 지침이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정부 대표는 “그렇다”며 거짓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부 대표는 또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대상이었다.

문화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콰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은 5월 11일에 발표된다.

[제네바 = 이주영]

● 5월 7일 ●

<시민의 신문>

사회권이행 정부 '유엔 보고서' 자화자찬뿐

규약이행·규약지위·난민·장애인 ①

구조조정 해고·난민불인정 장애인 권리 문제 언급 안해

인권단체, '반박보고서' 제출하고 참가단 스위스 제네바 파견

유엔에 제출한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 보고서가 정부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뿐,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 대한 보고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국제회의에 파견했다.

오는 5월 11일까지 19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의는 지난해 9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조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사회권 조약 이행보고서가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이번 보고절차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권 반박보고서'를 작성, 유엔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사회권연대회의' 참가단을 제네바에 파견, 각종 사진·통계 등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본지는 인권단체들의 반박보고서를 4회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들=IMF가 차관의 조건으로 요구한 구조조정은 노동의 유연화 증대와 동일시되어 실업과 비정규 고용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실행중인 전력·통신·의료 등의 사

유화정책은 공공서비스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서비스 혜택을 편중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은 기업규제 완화, 환경파괴 방치, 공공부문의 정부지출 축소, 공공성 약화를 놓았다.

-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작의적 적용, 노동·사회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하고 있다.

▲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지난 97년 자유권 규약에 따라 제출한 제2차 정부보고서에서 국내법에 대한 규약의 우선을 확인한 반면, 95년 사회권 규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에서는 신법·특별법 우선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해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인권관련 내용이 학교·교육기관에서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서는 국제인권법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소수의 연수생만이 강의를 듣고 있어 국내인권법의 홍보·교육이 미비하다.

▲ 난민의 권리(제 2조)=2001년 2월 현재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1백4명 중 단 1명만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정부는 난민인정신청기한과 이의신청기한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과 과도한 입증책임을 고집하고 있다.

- 난민신청인들은 직업·의료·교육 등에 있어 아무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의 6.8배에 달하고 있다.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0.91%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비율(2%)을 훨씬 밀돌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은 적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직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동본 기자 seol@kngo.net>

● 5월 8일 ●

<한겨레 21> 제358호

[특별기고] 사회권 흘대로 망신 살 뻔네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한국보고서 심사회의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

지난 4월23일부터 5월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4월30일과 5월1일 이를 동안 한국 정부가 사회권규약에 따라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1995년 5월에도 한국 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사하고 최종견해 및 권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지적된 권고사항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게 이번 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위원들은 6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특수성을 이유로 한 변명이 아닌 보편적 기준에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셈이다.

'사회권규약 우선' 인정하지 않는 헌법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해 정부 대표는 "헌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 일반적인 법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나, 사회권규약상의 권리가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사회권규약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원 중에는 사회권규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국 헌법 제6조는 19세기의 헌법이라며, 21세기에 걸맞게 사회권규약 등이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다. 더욱이 모든 위원들은 1995년 위원회가 사회권규약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하고 모든 국내법을 사회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사회권규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고 사회권규약상의 권리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교원의 파업권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대표는 교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로 인해 교원 또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파업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용인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정부 대표의 답변이 6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당시 정부 대표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군사부일체로 상징되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거론했으나, 위원회는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사회권규약에 일치하도록 '즉각'(immediately)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똑같은 이유로 교사의 파업권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을 강변한 것이다.

6년 전에도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례와 조합원

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폭력 사건, 금융노조 파업과 관련해 25명에 대한 유죄 선고(9명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6명), 제3자 개입금지조항 적용에 따른 양규현씨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 인권위원은 특히 파업의 형사처벌화(criminalizing the strike)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우자동차 폭력사태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긴급히 박경서 인권대사를 파견했고, 기조연설에서 이를 먼저 거론하면서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경찰의 잔인성(brutality)은 명백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답변과정에서도 조합원의 불법시위와 경찰을 인질로 잡은 행위 등을 언급하였으나, 경찰폭력은 “어쨌든 용납될 수 없는’ (unexcusable)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비 예산이 17%인 데 비해 사회보장예산이 7%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런 태도 역시 6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이번 심사회의는 특별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금융에 수반된 구조조정이 사회권에 끼치는 영향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논의했다. 민간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이후 모든 통계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간 단체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기조가 사회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9년의 정부보고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 1997년까지의 통계만을 수록하고 그 이후의 통계를 빠뜨렸다.

6년 전의 답변을 되풀이했다는 지적

정부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과 관치금융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재벌문제 등으로 서서히 붕괴되어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나 국제적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한국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의 조건을 협상하면서 사회권에 끼치는 영향 및 사회권규약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김대중 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인권철학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었다.

이번 심사회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법적 · 제도적 정비를 갖추어야만 하는 부문들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부 대표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난민신청자에게 6개월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외국인 인권에 관한 시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사항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급될 사항이 아니고 이주노동자의 자녀 또는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1992년에 난민조약에 가입한 이후 10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단 한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점이 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난민 인정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대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노동부 지침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답변내용의 진실성이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노동부 지침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문제됐다.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제2호, 제29호 조약 등 사회권신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국제조약들을 비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 대표는 4월30일 심사가 끝날 무렵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감격스럽게 전하였으나, 위원들은 중요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한 권리침해 사항을 관할하는지 여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약하게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규약위반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위원회 권고를 언제까지 무시할 건가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 장애인 · 노숙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사회보험제도의 실질적 확대 및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 △사적 의료부문의 과도한 비중과 공공의료예산 확대의 필요성 △에이즈정책 △높은 사교육비 문제 △문화적 창작물에 대한 검열제도 철폐 등 사회권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심도 깊게 지적됐다. 특히 최초보고서 심사 뒤 지적된 권고사항들이 거의 이행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권고는 2001년 5월11일 발표된다.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 다시 선출된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권고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보고서의 심사회의가 한국의 사회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선수/ 변호사 yeominlaw@hanmail.net

한국보고서는 ‘1급비밀’?

한국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민간단체에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신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 보고서 제출 사실 자체를 감추었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위원회를 통하여 간신히 정부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정부는 방어하는 입장에 서고 민간단체는 정부의 답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이런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민간단체로서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유쾌할 리 없기 때문이다.

1995년 최초보고서 심사회의 때 제네바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 총책임자로서 민간단체 대표들을 격려해주었던 박경서 목사가 이번 심사에서는 인권대사로서 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2001년 4월30일자 국정뉴스에는 박 대사가 “인권쟁취과정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한 인터뷰가 실렸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박 대사가 인권상황을 호도하지 않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박 대사는 제네바에서 정부 대표 일부와 민간단체 대표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높다. 우리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6개나 된다.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가 있어야만 국제기구에 의한 정부보고서의 심사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월 11일 ●

<연합뉴스>

“유엔, 교원 노동3권보장 등 권고”

권경복기자=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11일 국가인권위 설립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의미하는 ‘파리원칙’ 존중,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교육제도의 강화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은 이날 인권규약 중 ‘A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보고서 제2차 심의 최종평가서에서 이같이 권고하고,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을 함께 권고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의 권고배경과 관련, “우리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유엔의 권고는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무.교육.건설교통.문화관광.노동.보건복지.여성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 최종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평가서는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여성 및 아동권리 향상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UNHCR 서울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kb@yna.co.kr

● 5월 12일 ●

<연합뉴스>

유엔, 한국에 노조시위 공권력 자제 촉구

오재석 특파원=유엔인권기구가 11일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지위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에 관한 전담부서 설립 ▲공교육제도 강화 ▲인권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농촌부문, 농업, 식량생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3차 보고서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만연된 ‘요새심리(fortress mentality)’를 비롯해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도기, 전통 및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이민노동자 및 여성 등 일부 그룹의 주변화 현상, ‘경제제일주의’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낮은 비중 등을 규약 적용의 장애요인으로 열거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의 진전, 국민기초생계보장법.최저임금적용 범위 확대, 여성부 신설, 아동복지법 체택, 유엔난민고동판무관실 서울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명 ‘A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지난 76년 1월3일 발효했으며 ▲정당하고 호의적인 조건속에서의 근로권 ▲사회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물질적.정신적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및 문화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증진 또는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 규약은 76년 3월 23일 발효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세계인권선언 등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ojs@yna.co.kr

<조선일보>

유엔 “한국정부, 노조시위에 공권력 자제”

유엔인권기구가 11일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 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 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 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제네바=연합)

<중앙일보>

유엔 인권기구 "한국, 노조시위때 공권력 남용"

[제네바 = 연합] 유엔인권기구가 11일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이날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 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유엔, 한국에 공교육 실종 노조시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개선촉구

과도한 부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실종논란이 마침내 유엔인권기구가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이해적일 뿐 아니라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13개

항에 달하는 제안 및 권고 내용 중에서 공교육제도 개선에 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역할과 질적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지위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보장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함께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에 관한 전담부서 설립 ▲인권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 수립 ▲농촌부문, 농업, 식량생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3차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예 의해 강제되고 있는 만연된 '요새심리(fortress mentality)'를 비롯해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도기, 전통 및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이민노동자 및 여성 등 일부 그룹의 주변화 현상, '경제제일주의'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낮은 비중 등을 규약 적용의 장애요인으로 열거했다. 위원회는 문제와 관련,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의 진전, 국민기초생계보장법,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여성부 신설, 아동복지법 채택, UNHCR 서울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명 'A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지난 76년 1월3일 발효했으며 ▲정당하고 호의적인 조건속에서의 근로권 ▲사회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물질적.정신적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및 문화적자유와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증진 또는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 규약은 76년 3월 23일 발효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등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ojs@yna.co.kr

<부산일보>

'시위진압 공권력 자제를', 유엔인권위 한국에 촉구...'과도 경찰력 유감'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13개항 권고

유엔 인권기구가 11일 한국 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 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비정규 근로자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 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에 관한 전담부서 설립 △공교육제도 강화 △인권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농촌·농업·식량생산부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3차 보고서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만연된 '요새심리(fortress mentality)'를 비롯해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도기, 전통 및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이민노동자 및 여성 등 일부 그룹의 주변화 현상, '경제 제일주의'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낮은 비중 등을 규약 적용의 장애 요인으로 열거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의 진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여성부 신설, 아동복지법 채택,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산일보>

유엔 권리위원회가 본 한국 상황

'공교육 실종' 문제 이례적 언급, 중등 무상·의무교육 일정표까지 제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가 11일 국가인권위 설립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의미하는 '파리원칙' 존중,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교육 제도의 강화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것은 여전히 국내 인권상황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우리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유엔의 권고는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공교육 제도 개선방안.

위원회는 이날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보고서 제2차 심의 최종평가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공교육 부문에 할애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공교육 제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실종논란이 마침내 유엔인권기구가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국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교육·건설교통·문화관광·노동·보건복지·여성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최종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일명 'A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지난 76년 1월 3일 발효됐으며 △정당하고 호의적인 조건속에서의 근로권 △사회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물질적·정신적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및 문화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증진 또는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 규약은 76년 3월 23일 발효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세계인권선언 등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

<문화일보>

"유엔, 한국에 공교육 개선권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실종논란이 마침내 유엔인권기구가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사

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최근 한국내 노조시위에 과도한 공권력 사용 우려/유엔인권기구 지적

유엔인권기구는 11일 한국정부가 노조 시위에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은 최종 평가서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 해고와 실직으로 축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자 시위에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이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는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안 중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위 재검토와 관련자료의 제3차 보고서 포함 ▲교원·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제네바=연합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경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형사절차를 동원해 파업을 막는 것을 그만두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파업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최근 대량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침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1차 때는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고, 합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부당국에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조약의 국내법적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 및 이유도 없이 생계급여액이 급격하게 삭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심의·해석 기관인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95년에 낸 '최종견해'를 재확인하고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권고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제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에 따라 한국의 사회권 상황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안과 권고', '가장 우려되는 분야', '긍정적인 면' 등 45개 항목에 이르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권리나 일부 계층의 권리가 경제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8%에 이른 시점에서 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건강보험적용률도 낮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재고하고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다.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친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의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토론장인 제네바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다. 아마도 정부는 한국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IMF의 말은 국제사회의 유일한 평가인 양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분명 '착각'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제 회생과 시장경쟁력 향상이란 목표 속에 희생된 권리를 애도했다. 나아가 IMF와 구조조정에 대해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왜 사회권 보장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냐고 한국정부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결국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 우선주의'에 숨이 막힌 사회권을 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좌표의 문제이다. '파이부터 키우자는' 발상은 이제 땅에 묻어야 한다. '특수한 안보상황, 문화적 전통'에 기대어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낡은 수법도 함께 판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등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회권의 '즉각적 실현'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 실현'이란 소극적 이행 원칙조차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령껏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네바에서 정부가 내뱉은 사회권 보장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는 눈과 귀가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유보 없이 이행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서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전한 인권을 되돌려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인권단체 '유엔권고' 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12일 유엔 인권기구가 공권력 남용 자체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데 대해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최근 고용불안과 부익부 빈익빈 심화,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를 위해 인권이나 특히 경제, 사회적 권리는 미룰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jkpark@yna.co.kr

● 5월 13일 ●

<노동일보>

한국 공교육 실종 유엔서 '도마' 위에

유엔인권기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의 공교육 강화·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실종 논란이 마침내 유엔인권기구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이해적일 뿐 아니라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13개항에 달하는 제안 및 권고 내용 중에서 공교육제도 개선에 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역할과 질적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동

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다. / 제네바=연합

<노동일보>

유엔, 사회권 보장 권고

"한국은 IMF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 "교원·공무원 노조결성 보장을"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 주거권 등 사회권을 뒷전인 채 IMF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유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노동일보 4월21일자 1면 참조)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13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지난 1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규약상의 의무를 고려치 않았다"며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신이 대량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는 최근 대우차 노동자 폭력진압과 관련 "모든 사람들은 경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58%)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권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조결성 자유와 파업권 보장을 권고하고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처럼 기준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간사는 "헌법 6조에 따르면 정부가 가입한 국제조약과 국내법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정부는 성실한 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유엔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심의기관으로서 한국은 지난 95년 1차 심사를 받은 이후 6년만에 2차심사를 받았다. /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5월 14일 ●

<동아일보>

유엔 "한국 사교육비 대책 세우라" 정부에 권고

유엔인권기구가 한국에 대해 과도한 사(私)교육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산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한국정부는 경제발전에 걸맞은 교육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교육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재검토해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한국을 포함한 135개 비준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유엔산하 기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권고안을 작성, 발표한다.

위원회는 또 평가서에서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자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이더라도 이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평가서에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 재검토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주택문제 지원에 관한 정부전담부서 설립 등 한국 정부에 대한 13개항의 권고내용이 담겨 있다. <제네바=연합>

<문화일보>

“<사설> 교육이 인권문제임을 일깨운 유엔”

정부의 공적 기능은 더러는 너무 지나쳐서 탈, 또 더러는 너무 소홀해서 탈이다.’ 유엔이 한국 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2차 보고서에 대해 내린 평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1일 최종평가보고서 제안 권고 13개항을 통해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 자체를 제안하는 한편, 공교육의 역할 수준 재검토와 함께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경감을 권고했다. 노동권 공권력 평가부분은 근래 대량해고 실직으로 유발된 노동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대변한 만큼 국민과 세계가 공감할만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히다. 우리는 특히 교육개선이 유엔권고 중 제1의 비중임에 주목하며, 교육 받을 권리가 노동권 생활권 건강권에 뜯 아니라 가난 불평등을 대대로 유전시키지 않기 위한 핵심내용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 새삼 들먹이기 민망할 정도로 공교육 부활은 최대, 최급선무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열악한 공교육제도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유엔지적에 외형규모만 대입하더라도 교육예산 총22조원에 비해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는 6조원, 실제론 20조~30조원에 이르리라는 추산이다. 교육비 개인부담의 폐해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대물림으로 유전되게 마련이다. 김대중대통령은 5·15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정부의 경각심을 당부하면서 연내 공교육내실화 방안 마련을 거듭 다짐했다. 이 다짐이 공교육 재건의 새 전기가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일보>

“한국 사교육비 과증” 유엔, 공교육강화 권고 과도한 공권력 자체 등 13개 권고사항 제시

유엔의 국제규약 심의기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1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열악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교육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공교육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제네바에 소재한 이 위원회는 또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범죄시하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 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한국일보>

유엔, 한국정부 견해서 “소득불평등, 해고 제대로 대처못해”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한국 정부에 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는 1997년 환란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한 한국의 사회권을 21개 항목에 걸쳐 ‘주요 우려사항’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공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노조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법 및 과도한 국방비 등을 강도 높게 거론, 한국 정부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량해고, 소득불평등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견해서 서문은 또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기보고서가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정보를 담고 있지 못했다”며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지난 번 최종견해에 명시한 제안사항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국제규약은 일명 ‘A규약’으로 불리며 1976년 1월 3일 발효됐다.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세계인권선언’ 등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음은 13개 항목으로 된 ‘제안과 권고’의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신설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 평등적 관점이 적용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비정규’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을 재검토하고(혹은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상의 권리들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경제적합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파업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킨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 맞는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1. 중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설정(Timetable) 2.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완화 차원에서 공교육 시스템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3. 고등교육을 포함,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4. 사회 각계 각종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5.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중앙일보>

유엔, 한국 교육제도 강화 권고

[제네바=연합]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높은 경제발전에 걸맞게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교육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으로 자녀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의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공교육 강화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이날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13개항에 달하는 제안·권고사안 중 공교육제도 개선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세계일보>

"한국 사교육비 저소득층에 부담"/유엔, 공교육 강화 권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실종논란이 마침내 유엔인권기구가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공교육 제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13개항에 달하는 제안 및 권고내용중에서 공교육제도 개선에 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역할과 질적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다. /제네바=연합

<한겨레>

"연대회의 "유엔 경제 사회권 권고 이행을"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13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는 공권력 남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즉각 이를 이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고용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를 위해 인권이나 특히 경제 사회적 권리의 미를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1일 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보고서를 검토 심의한 뒤 "한국 정부는 시위 진압에 있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권력은 자제하라"는 등 13개 사항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공교육제도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대우 개선 및 권리보장 △낙태율과 호주제도 개선 △정부 내 주거문제 전담부서 설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가입한 뒤 95년에 1차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4월 말 2차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았다. 최혜정 기자

<시민의 신문>

"이주·비정규직 노동착취 심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저임금 장시간노동

파견근로자법 고용불안 가중

사회권이행 유엔인권보고서 반박<2>

- 이주노동자 노동권·비정규직·산업보건·노동3권

▲이주노동자의 권리=한국은 현실적으로 이주노동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29.6%를 차지하는 산업연수생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연수생들은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평균 임금은 64만8천원(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60%)이다.

노동부 예규에 따라, 심지어 이 임금의 50%마저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적립된다. 정부는 '연수취업제'를 신설해, 산업연수 2년을 받은 노동자가 시험을 통과하면 1년간 노동자의 지위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연수취업자는 0.3%에 불과한데다, 임금·노동시간 등 인간다운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도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3권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고용형태 다양화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합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대한 규제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며, 독립도급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 산업보건=산업재해율은 98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각종 안전 관련 규제완화와 당국의 관리소홀로 현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해진 것이 원인이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감축된 상태에서 작업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산재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 노동3권=위원회의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반공무원과 대학교수의 노동3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허용하기로 되어 있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허용을 다시 5년간 유예함으로써 단결권 실현을 저해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에 대하여 정부가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노조 간부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방해하고,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기사작성자:채선희

<시민의 신문>

[기고 : 운동의현장] '사회권' 보장 노력하고 있다?

이 주영(인권운동사랑방)

스위스 제네바의 한 회의장. '코리아' 가 줄곧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상황을 국제인권의 눈으로 평가하는 회의가 열리는 중이다.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제25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5개국 중 하나가 한국인 것이다.

정부, 유엔회의장서 말잔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권리실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90년에 조약을 비준한 한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권·사회단체들도 제네바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보고서에는 정책만 나열돼 있을 뿐, 'IMF 구조조정' 아래 사회권 실현에서 더욱 멀어진 민중들의 삶에 대한 기술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었다.

회의 첫날인 23일 오후 NGO들의 공식 발표시간, 경찰에 두들겨 맞아 피 흘리는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으로 우리들은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들은 IMF의 구조조정에 발맞춘 한국정부의 경쟁과 효율 중시의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들, 사회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저소득층 여성·장애인 등은 한국 사회권 상황을 설명하는 키워드였다.

정부의 제네바 대표부 사람들은 NGO 발표부터 무척 긴장하는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본부)에서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부각되지 않게 하라는 특별지시가 왔다고 했다.

4월 30일과 5월 1일 이를에 걸쳐 진행된 한국 심사 때 정부 대표는 서너 차례나 반복해 대

우차 사태를 해명했다. "경찰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이 먼저 경찰을 인질로 잡고 좋지 않은 언사를 했다"는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권위원회들은 대우차 폭력 사태가 일회적인 사고가 아님을 간파하고 있는 듯 했다. 자메이카의 라트레이 위원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프랑스의 멕시에 위원은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멕시에 위원은 "합법 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 짓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대표는 "파업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끝웠다.

또 교원의 파업권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원들은 사회권 조약에 일치하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위원회의 권고를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한국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위원회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1백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 중 단 1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위원들은 놀라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는 "'인도적 차원'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는데, 루마니아의 차우스 위원은 "교육은 아동의 권리로서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들, 조약이행 크게 질타

정부는 이번에도 방위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회보장비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제약에 대해 예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들며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사회권조약이 보장하는 각 권리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심사회의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과 높은 의료비·사교육비 문제, 강제철거 시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한국정부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는 5월 11일에 발표되었다. 정부는 "사회권 조약을 존중하고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수사를 그만두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조약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민중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 보장하는 길의 시작일 것이다.

● 5월 15일 ●

<한겨레>

"시민단체, 유엔 권고사항 이행 촉구"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 해당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공교육제도 강화,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 자체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기조의 변

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보고서 제출을 견제한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했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유엔권고사항 이행 촉구”

김성진기자=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 해당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공교육 제도 강화,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 자제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보고서 제출을 견제한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했었다. sungjin@yna.co.kr

● 5월 16일 ●

<KOREA HERALD>

Civic groups push for government action on U.N.recommendations

by kang seok-jae staff reporter

A coalition of social and civic groups called on the government yesterday to immediately carry out various recommenda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made by a U.N.panel.

In a press conference, the Korea Network for Second Submission of the Counter Report under ICESCR, called for a prompt change in government policy to fulfill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Seoul government should pay special heed to such recommendations by the U.N. panel as the need for strengthening for public education system and exercising restraint in the use of force by police in labor demonstrations,” said Lee Joo-young, coordinator of the Sarangbang Group of Human Rights.

Sarangbang is one of the 17member groups constituting the Korea Network. The network was set up in June 2000 to monitor for government’s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recommend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gnator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took effect in 1966, are obliged to submit to their respective country reports every five years, which the U.N. committee reviews and mak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Korea join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in 1990.

Wrapping up its review of five of its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 committee made numerou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last Friday. The recommendations were the second of its kind by the U.N. committee following its first recommendations in 1995

“As the committee regretted that most of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upon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have not been implemented, the Seoul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abide by the recommendations,” Lee said. Lee went to Geneva late month to attend the U.N. committee meeting along with three other Korea Network members.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right of teachers and other civil servant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to strike should be guaranteed in law and in practice, she said.

“it also recommended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irregular workers be includ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due out in 2006,” Lee said.
(sjkang@koreaherald.co.kr)

● 5월 26일 ●

<인권하루소식 제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기관 △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홍보계획 △사회권 각 권리별 이행계획 △국가보안법과 방위비 지출 등 사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힐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권의 각 권리별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마영삼 과장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권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한 텁 서비스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원]

<월간 말 2001년 6월호>

유엔 통신 사회권위원회 한국보고서 심의 송곳 질문에 '넘기고 보자'식 답변

이우현 본지 스위스 통신원

2001년 4월 23일, 이날 오전에 시작된 제25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회의장. 홍콩NGO대표단의 발언이 끝난 오후 4시 20분, 실내등이 꺼지면서 의장석 뒤로 슬라이드화면이 비춰지고 그 곳에 선혈이 낭자한 채로 쓰러져있는 대우 자동차 해고 근로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6년 전 한국의 비정부단체 대표가 이 자리에서 발언 할 때도 머리에 피 흘리는 파업근로자의 모습이 서두를 장식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발언이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장면과 함께 시작됨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17개 NGO대표 자격으로 파견된 박경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발표는 이렇듯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제한시간 7분을 훨씬 넘긴 4시 35분,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장식한 후 마무리되었다.'부평'의 잔영이 회의장 창 밖으로 보이는 레만호의 눈부신 정경과 뒤섞여 고통스런 '폭력의 미학'으로 섬뜩하게 다가왔다. 잔인한 봄날의 오후였다.

'어김없는' 노벨상, '어쩔 수 없는' 대우사태

그로부터 일주일 후, 4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시작되었다.'사회권위원회'란 1976년에 발효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유엔산하기관으로서 규약에 가입한 정부는 규약내용의 준수여부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지난 1990년에 사회권 규약에 기입한 한국은 1995년에 1차보고서 심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번이 2차보고서 심의가 되는 것. 6년이란 세월 동안 한국에서는 '문민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교체되었고, 남북관계가 '6.15회담'으로 해빙되었으며, 그 한복판에 IMF라는 생소했던 이름이 한복판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 즉 '우리네 삶의 조건'은 어떤 모양으로 변천 해 왔는가. 이제 유엔의 이름으로 18개국에서 선임된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대표에게 질의하고 평가를 내린 후 의견을 모아 최종견해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전부에게 부담스러운 '도덕적 책무'로 던져질 것이 분명하다.

오후4시,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정부 5개 부처에서 특파된 10명 '대규모'대표단이 한사람씩 소개되었고, 아울러 현정권의 '인권의지'를 특별히 강조하려는 듯 박경서 인권대사가 위원들 앞에 섰다. 이어 약30분간에 걸친 정부대표의 기조연설에서는 지난 6년 간 이루었던 성과와 미진했던 점이 포괄적으로 소개되었고, 막간에 노벨 평화상은 '어김없이', 대우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과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인정하는 솔직함도 보였다.

항목별 의제에 따라 본격심의에 들어가자 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펼쳤기 시작하

였고 정부대표단도 이내 '전시체제'에 돌입, 이후 1시간 30분 동안 가히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광범위한 사안을 포괄하는 사회권내용가운데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성차별,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자 등의 문제들이 이날 다루어졌으며, 특히 1차보고서 심의 후 지적된 권고 사항이 그 후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사회권규약이 국내에서 '흘대'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헌법조항을 인용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인상을 주었다. 끝나갈 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한국시간으로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마치 '낭보'를 전하듯 알렸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회권 보장기능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예봉을 피하기에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바깥 날씨만큼이나 후끈거리는 실내의 열기 속에 첫날의 심의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면접보다는 내신에 신경써야

이튿날 오전 10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각급 학교, 관청 및 대다수의 직장이 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권위원회는 정시에 속개되었다. 이번 심의기간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대우자동차 문제가 거론될 것이 확실한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는 정부대표단의 얼굴에는 묘한 '전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전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은 후, 예정대로 노동문제가 심사대에 올랐고 교원, 공무원 노조문제와 함께 '부평'이 드디어 단상에 등장했다. 정부측 해명은 첫날 기조연설시 언급내용과 다른 것이 없었다. 즉 불법시위에 경찰까지 불모로 잡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권력이 행사되었고, 진압방식이 '잔인'했던 점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이번 일만은 예외적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남공단의 캐리어 주식회사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란 말인가

이밖에도 사회보험제, 의료 및 교육, 소외계층, 창작의 자유 등의 문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졌지만 전시효과가 큰 몇몇 조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분야가 극히 드물어 위원들의 질문공세에 '일단 넘기고 보자'식의 답변이 속출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을 현 정권의 정치적 치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국가보안법문제가 제기되면 들연 '적과 대치운동'하는 표현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구태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오후6시, 이틀에 걸친 도합 8시간의 심의는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고 정확히 열흘 후 발표된 위원회의 최종견해만 남겨놓게 되었다.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거나 궁색한 답변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대로 솔직했고 위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면접시험 아무리 잘 본 들판 내신성적이 형편없으면 아무 쓸모 없듯, 외양은 내실을 갖추었을 때 진정 빛나는 법, 숨가쁜 민생은 숨돌릴 기미가 없고 사회정의 구현에 모양새를 따지기에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동초' 대통령은 잊지 않고 있으리라

<월간 말 6월호>

IMF가 박탈한 사회적 권리를 복원하라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5월 11일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사회

권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진행됐던 지난 4월 30일, 5월 1일 한국정부대표와의 청문 과정과 그 후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나온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한국의 사회권 수준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종합적인 평가서로서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서다.

IMF가 후퇴시킨 한국민의 사회적 권리

최종견해에서 위원회가 우려사항의 첫째로 꼽은 것은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사회권을 방어하지 못하고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정부에 대한 질책이자,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IMF와 협상할 때 중요한 방패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IMF의 처방이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권의 후퇴를 몰고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정리해고·고용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많은 사람들의 주변화로 나타났다"는 위원회의 우려가 이를 반영한다. 즉, 위원회는 구제금융을 미끼로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하는 IMF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IMF에게 책임을 물여지를 주지 않는다. 애초에 불완전한 시장경제가 문제였고, IMF의 구조조정 처방은 시장경제의 완성을 향한 개혁의 과정이라고 믿는 정부의 태도는 제네바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부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하지만, 국제적 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던 것. 위원들로부터 "정부의 기본적인 인권철학이 과연 그런 거나?"라는 비판 섞인 질문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경쟁력을 강조한 건 함께 나눠 먹을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였다. 진정한 인권 보장 없는 경제성장이 의미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고 답했다. 사회권 보장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헛히 듣는 이야기다.

사회권을 경시하는 정부들은 사회권 규약이 추상적이며, 돈이 많이 든다면 권리 보장을 유보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 대표와의 청문 과정에서 위원들은 "재정 문제는 결국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최종견해에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사회권 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과 '경제우선적 접근'이 사회권 실현의 장애요소로 지목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문제 지적과 권고를 통해 사회권이 지극히 추상적이라 는 주장도 불식시키려고 애썼다. 소득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에 우려를 표하며 비정규 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상의 권리들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국민들의 정서와 전통 문화를 핑계로 교원과 공무원에게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위원회에게는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적 관념의 수호자"로 비쳤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권 전문가인 위원에게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약 8조를 상기시키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거문제도 매우 구체적으로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사안이다. 위원회는 주거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금하고 있는데, 한국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없다는 점을 전해들은 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권에 이르면,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보다 명확해진다. 위원회는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 계획에는 △중등교육을 무상의무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기한 설정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이 부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시스템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비롯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와 접근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 여성, 난민, 이주노동자, 아동,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도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구성한다.

사회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화와 사회권을 연관지어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의무로서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구조조정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무기로 자본의 세계화를 통제하고 민중들의 인권을 지켜내는 전략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힘은 미약하다.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라는 인권기구들의 요구에 IMF는 자신의 현장 외에 다른 규범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강짜를 부린다. 결국 전혀 동요치 않는 국제금융기구와 상대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들의 어깨만 무거워질 수도 있다. 물론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선 한국의 경우 또 얘기가 다르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든 인권규범, 특히 사회권 규약에 대한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힘은, 역으로 사회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하라"고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때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정부에 의해 이행되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료5> 2001년 6월 11일 성명서

<자료5> 2001년 6월 11일 성명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력 탄압을 중단하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력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1. 올해 들어서만 1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다시 효성 울산 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하로 회귀하고 있다. 더구나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의 방조 아래 행해지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동권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가 다시 군사정권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불법파업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파업을 불법으로 여기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최근의 정부조치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와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	한국정부의 최근 조치
-그 파업이 불법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잘못되었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 권고	올해 들어 구속 노동자 100여명, 확인된 수배노동자 73명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파업에 대한 경찰력 사용 자체 촉구	6. 5.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력 투입, 여천 NCC 등에 경찰력 투입 검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	-노동위원회 대한항공, 코오롱, 한국중공업, 두산기계, 코람프라스틱, 금속노조마창지회 등에 행정지도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판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촉구	-전공련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 표명

이미 지난 3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권고를 한 바 있다.

3. 우리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문제가 노사간 자율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경찰의 불법입장을 천명하고 여전 NCC 등에 대한 더 이상의 경찰력투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 노동부, 노동위원회, 검찰을 동원한 불법파업규정을 중단하라.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셋. 전공련 지도부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01년 6월 11일

<별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관련 내용

지난 2001. 5. 11.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 파업이 불법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 6> 재정 보고

<자료6> 사회권 연대회의 재정 보고(2001.6월 현재)

수입		지출	
분담금	145만원	1차 보고서 활동 자료집 및 사회권 규약 관련 자료 모음집 제작(16부)	308,480원
-15개 단체(문화연대와 민예총 공동납부)	140만원	약식보고서 제작(30부)	120,000원
-1개 단체(분납)	5만원	약식보고서 영역감수자(2명)	200,000원
		우편발송료	3,000원
		송금 수수료	1,000원
1차 보고서 활동 자료모음집 추가 신청	2만원	우표 (2000.9.21)	5,040원
이자	517원	우표 (2001.1.5)	3,000원
이자	1,595원	본보고서 유엔 발송용(영문 30부, 4/11)	180,000원
추가 분담금	450,000원	본보고서 참여단체용(한/영 28부, 4/11)	112,000원
(민중의료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3개 단체 완납)		보고서 유엔발송비용(페덱스/4.11)	278,200원
민변 특별 분담금	2,000,000원	발표에 필요한 영상자료 편집비용(4/16)	50,000원
특별후원금	2,000,000원	**본보고서영문감수	200,000원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자간담회자료비(4/20)	15,000원
특별기여금(김선수 변호사)	500,000원	기자간담회 장소대여료(4/20)	80,000원
		대우차 비디오(4/20)	10,000원
		제네바 참가 활동경비	4,840,250원
		은행수수료	1,800원
*중간결산 (5.11)	총 수입 6,122,122원	총 지출	6,407,770원
	잔액		-285,658원
이자	1,613원	기자회견 장소대여료(5/15)	80,000원
추가 분담금	300,000원	기자회견자료 복사비(5/15)	16,500원
(노동과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김서중, 한 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개 단체)		공개질의서 복사비(5/25)	2,700원
		공개질의서 발송비(5/25)	7,980원
		**본보고서영문감수	-200,000원
		자원활동선물(감수/파워포인트) 285HKD=(48,490원)	
총 수입	6,423,725원	총 지출	6,363,440원
잔액			60,285원

**<자료7>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를 홍보한
해외단체 목록**

<자료 7> 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를 홍보한 해외단체 목록

ACPP acpp@pacific.net.hk
ATTAC attac@attac.org
Anne Christine(FIDH) fidh@asi.com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ahrchk@ahrchk.org
Aurora A. Parong, M.D. tfdp@info.com.ph
Cecilia Jimenez(APT) apt@apt.ch
DAGA dagainfo@daga.org.hk
Dan Cunniah(ICFTU) dan.cunniah@geneva.icftu.org
Elizabeth Wong(SUARAM) eliwong@lobbyist.com
Forum Asia chalida@mozart.inet.co.th
Human Rights Internet laurie@hri.ca
Institut Social Jarkarta isj@indo.net.id
Kwark Eun-Kyung IKwark@compuserve.com
Lucy Mair(Centre for Economic & Social Rights) LMAIR@cesr.org
Nathalie Mivelaz(OMCT) nm@omct.org
Park Seong-won(WARC) swp@warc.ch
Pierre Rousset Pierre.Rousset@ras.eu.org
Rajiv rnarayan@amnesty.org
Sangheon LEE(ILO) lees@ilo.org
Sidney Jones(HRW) joness@hrw.org
Tae-Ung Baik baikt@hrw.org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tpts8.seed.net.tw
Asian Regional Resoure Center(ARRC) arrc@ksc.th.com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JAR) jar@kt.rim.or.jp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ICJ) seiderman@icj.org
Taraqee Passand Organization jamil1999@hotmail.com

<자료8>

**사회권위원회의 지적 사항 및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 간담회**

<자료8>

▲ 사회권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간담회 ▲

날짜 : 2001년 6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세종로 정부 청사 817호

참석자 :

- 청와대 : 신필균 시민사회비서관
- 외교통상부 : 박경서 인권대사, 강경화 국제기구심의관, 마영삼 인권사회과장, 오낙영 인권 사회과 서기관, 이승범 인권사회과 사무관
- 법무부 : 민만기 검사(인권과)
- 노동부 : 최성요 사무관(국제협력담당관실)
- 보건복지부 : 이석규 서기관(국제협력담당관실)
- 여성부 : 조윤혜 행정주사(국제협력담당관실)
- 행정자치부 : 이재영 서기관(복무조사담당관실)
- 건설교통부 : 유성용 사무관(주택정책과)
- 문화관광부 : 정영석 사무관(문화교류과)
- 통계청 : 허진호 사회통계과장(사회통계과)
- 교육부 : 김명구 서기관(국제협력담당관실)

<회의록>

박경서(인권대사) 인사말 : 사회권 규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권연대회의가 낸 보고서도 공부하고 정부 대표로서 공무원 선생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느끼는 게 몇 가지 있다. 6년 전 사회권 규약 심사 받을 때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다. 첫째, ‘계속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로 각 국가에서 잘 하면 한 가지 보고서가 나오는 게 통례다. 사회단체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서를 낸다 할지라도, 말이다. 어떻게 하면 전향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협력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독일·영국 등 EU 여러나라들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없을까? 3차 보고서가 5-6년 후에 나갈 때는 공동의 GO/NGO 보고서 내고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고서 내도록 하면 좋겠다.

강경화(외교통상부) : GO/NGO의 협력이 많이 부족했다. NGO와 보다 많은 협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최종평가가 5월 11일에 발표된 후 사회권연대회의에서는 공개질의서를 보내왔고,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은 6월 2일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6월 2일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업무 분담을 했다. (업무 분담한 내용 : 별첨 1 참조) 물론 이행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조를 할 것이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외교통상부는 대외적인 코디네이션과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다.

공개질의서 5개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가 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는 법무부다. 나 항 최종견해의 흥

보 계획과 관련해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부처별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외교통상부는 국/영문 번역해 사이트에 올렸다. 다른 부처들은 어떤지 나중에 답해달라. 다 항. 각 권리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라 항.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부 내에서 또 각 당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Consensus가 형성되지 못했다. 마 항.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직접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해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이 분야는 재정경제부에서 앞으로 스터디를 해야 할 부분이다.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 첫째. 홍보 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규모있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둘째. 다 항 각 조항별 이행 조치 계획은 대강이라도 언제쯤 나을 수 있나?

민만기(법무부) : 홍보 문제는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이행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4월 27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이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집회를 국회 앞에서 하는 등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허진호(통계청) : 정부에서 93년, 99년에 사회권 관련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통계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위원회의 평가서에 있던데 통계청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유엔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그런 견해를 밝혔고, 정부는 어떤 자료를 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구체적 자료를 알면 좋겠고,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강경화(외교통상부) : 통계청의 잘못은 아니다. 원자료를 제시할 뿐이기 때문에. 사회권위원들은 NGO와 GO가 제시한 통계의 괴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정부가 제시한 통계와 사회단체나 국제기구가 제시한 통계 간의 괴리를 보였거나 통계가 빈약해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실업, 비정규 노동 관련 통계, 빈곤률, 강제철거, 사교육비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공개질의서의 4쪽 18, 19항을 통해 사회권연대회의 의견을 밝혔다. 노동 관련 통계라든가, 빈곤, 강제철거, 사교육비 등의 통계를 낼 때 노동계라든가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념 및 기준을 설정하고 통계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유성용(건설교통부) : 위원회의 최종심사평가서를 보면 문제인 부분들이 있다. 우선 첫째는 최종평가서 40항에 보면 마치 주택 당국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둘째는 도시 집중은 모든 나라에 있는 문제인데,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셋째는 강제철거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강제철거란 없다. 넷째는 주택 보상 문제인데, 재건축 사업의 세입자는 주택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섯째는 주변화된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 문제인데, 이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에 이미 주택정책과에서는 주거기준을 만들고 이들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게 위해 노력해왔다.

서종균(도시연구소) : 첫째. 주택당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하소연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다. 둘째. 강제퇴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는데 적법한 절차라 말씀하시는 용역 깡패 동원해서 철거하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가? 우리 법 상에서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회권규약에는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다. 또 철거민에 대한 대책이 다 이뤄진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 세입자들은 주택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령民間에서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나올 수 있다. 민간 개발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 부처에서 강제하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오늘 같은 모임 의미가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건설교통부나 통계청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볼 때 그렇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은 정책을 실행할 때 국제인권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평계다. 통계 이야기도 나왔는데, 단지 민간단체들과만 통계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세입자가 주택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입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적 시각인 것이다. 이런 국제인권적 시각을 수용하면 좋겠다. 3차 보고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볼땐 실질적으로 지적사항과 권고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부부처들이 모인 이 틀은 얼마나 구속력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강경화(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도 국제인권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이번 회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실행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영(행정자치부) : 외교에 대해선 잘 모른다.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교원은 이미 보장돼 있고, 체신, 의료 분야 등의 공무원들도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에선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권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 공무원이 만약 노동권을 갖게 될 경우, 어느 정부에서 관장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현재의 공무원 협의회만 행정자치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아까 홍보를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무리가 있다.

최철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우선 접어놓고, 이 자리가 참 민망하다.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 후 집단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서 작성은 결과일 뿐, 권고를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다. 각 부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교부에서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겉치레로 간담회할 것이 아니다.

강경화(외교통상부) : 아직은 초기 단계로 업무 분담만 했을 뿐이다. 겉치레만 하자는 것 아니다. 지속적, 혼신성 가지고 해야 한다. 정부 메카니즘 상 즉각적인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 작성만을 위해 모이는 건 아니다.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각 조항별로 업무 분장한 건 일진보한 거다. 다만 각 부처에 권고 사항만 달랑 주니까 각 부처에서 항변을 해오는 것 같다.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지금도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 민주노총 탄압 등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처 법무부든 외통부든 나서서 각 정부부처들이 사회권의 맥락과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경서(인권대사) : 내가 잘못한 게 많다. 공개질의서 받고 각 부처 만나서 업무분장만 한 채 오늘 회의 일정을 잡았다. 나의 주안점은 보고서만 잘 만들려는게 아니라 권고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거다. 유엔이 국내 실정을 잘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도 국제인권 시각을 배워야 한다.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 국제인권규범에 대해 공무원들을 인권 교육할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신필균(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 정부에서 인권을 이야기한지 얼마 안됐다. 아직 시작단계이고, 인권법이 반포된 후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안별로 개념을 공유하는게 문제다. 정부와 사회단체 간에 개념의 차이가 크다. 구체적 이야기를 해보자.

김기연(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오늘이 우리에겐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

는 자리이다. 우선 각 부처가 사회권위원회 권고의 맥락, 논의 배경을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행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아닌가.

강경화(외교통상부) : 전체적인 맥락과 회의 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각 부처에 보낼 것이다. 각 부처 내에서도 보다 협의가 필요하고, 부처간 협의도 필요하다.

허진호(통계청) : 통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하겠다. 오해가 있거나 견해 차가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NGO에서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 분야별로 NGO의 실무 담당자와 협의하겠다.

박경서(인권대사) : 법무부가 관장하기로 했는데, 인권과에 가 보니 세 사람이 앉아 있더라. 각 부처들도 담당자들이 바뀌곤 한다.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모인 건 이번이 첫 번째 시도인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런 모임을 가져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정부 쪽이나, NGO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최철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각 정부부처에서 사회권 권고 이행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이런 자리가 유효성을 가지려면 각 부처 내에 담당자가 있고,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기 별로 사안이 발생하면 굳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분야별 창구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구체적인 부분에서 진전이 있을 거다.

오낙영(외교통상부) : 첫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의하려고 했더니 정부 각 부처 내 focal point(담당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각 부처에서 담당자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둘째. 각 부처들이 국제규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각 부처에서 국제규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셋째. 정부는 핵심인권협약 6개에 다 가입돼 있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는 논의가 정부들 간에 진행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주도 하에 회의가 진행 중이다. NGO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아주면 좋겠다.

강경화(외교통상부) : 공무원들은 현실 속에만 있는 편인데, 여러분의 인풋(input)이 있어야 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대사님의 생각은 매우 좋은 것 같다.

박경서(인권대사) : 인권교육은 여러분(인권, 사회단체)이 하는 거지요. 각 부처 내에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고, 거길 통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모였으면 좋겠는데...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사회단체 차원에서 어떤 수준으로 함께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사회권규약과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보고회를 갖는 건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요청드리는 바다. 우려스러운 건 정부에서 제안하는 평가회가 뒤북치기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도 당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범죄시하고, 민주노총이 와해될 정도로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 사회단체들도 정부가 제안하는 평가회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강경화(외교통상부) : 제안하는 정기회의에서는 평가만이 아니라 컨설테이션(협의)까지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점심식사---

<협의 결과>

-각 부처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소속한 과가 사회권과 관련한 담당자가 된다.

→ <별첨 2 참조>

-각 정부 부처 내에서 이 업무의 중요성이 인지되도록 박경서 인권대사와 신필균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다.

-분야별로는 일상적으로 각 부처의 담당자가 문제 및 이행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협의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약 6개월에 한번 씩 갖도록 한다.

-다음 회의는 각 부처에서 이행 프로그램이 성안되고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으로서, 11월 28일 수요일 오전에 갖는다.

-이행에 있어 예산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다음 회의에는 참여 여부 요청한다.

-회의를 기획, 준비하는 것은 법무부의 인권과, 외교통상부의 인권사회과, 사회권 연대회의 의가 한다. 사회권연대회의에서의 준비 담당자는 사회권연대회의 내 협의를 거쳐 추후에 통보한다.

<별첨 1. : A규약 심의 최종심사평가서 국내조치 이행 업무분담 : 정부 문서>

1. 주무 총괄부서 : 법무부

2. 조항(최종심사평가서) 별 부처 업무 분담

제12, 13조 : 재정경제부

제14조 : 통계청

제15조 : 법무부

제16조 :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제17조 :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제18조 : 노동부

제19조 : 교육부, 법무부

제20조 :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노동부

제21조 :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제22조 : 국무조정실, 농림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제23조 : 보건복지부(회의 때 받은 문서에서 '노동부' 삭제)

제24조 : 노동부

제25조 : 건설교통부

제26조 : 보건복지부

제27조 : 교육부

제28조 : 교육부, 여성부

제29조 : 교육부

제30조 : 법무부

제31조 : 교육부, 해당부처

제32조 : 법무부, 문화관광부

제33조 : 전 부처

제34조 : 법무부, 보건복지부

제35, 36조 : 법무부

제37조 : 여성부, 기획예산처

제38조 : 노동부

제39조 : 행정자치부, 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제40조 :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제41조 : 건설교통부

제42조 : 교육부

제43조 :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제44조 : 법무부

제45조 : 농림부

※ 구체 사업 이행시 관계부처간 협의에 따라 상기 전담부처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별첨 2. 부처별 A규약 이행을 위한 Focal Point : 정부 문서>

- 외교통상부 : 인권사회과
- 법무부 : 인권과
- 노동부 : 국제협력담당관실
- 보건복지부 : 국제협력담당관실
- 여성부 : 국제협력담당관실
- 행정자치부 : 복무조사담당관실
- 건설교통부 : 주택정책과
- 문화관광부 : 문화교류과
- 통계청 : 사회통계과

※ 상기 합동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부처의 Focal Point는 동 부처들과 협의 후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권 연대회의 실무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 (02) 522-7284

팩스 : (02) 522-728

E-mail) m321@chollian.net

전화 : (02) 741-5363

팩스 : (02) 741-5364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jylee0530@orgio.net